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과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정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기상측기검정증명서에 영문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상요소별”을 “관측장소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통신체제”를 “통신체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를 “송수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을 “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으로,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를 “내용 중 변동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로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 견본품 3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기상측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
5.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도 또는 회로도 등의 서류
6. 해당 기상측기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기상측기 견본품을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해할 수 있다.

④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받으려는 기상측기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4(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한 기상측기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기상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대행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기상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6(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재질·색상 등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의3제2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구조·재질·색상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대비표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7(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기상측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및 기상측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형식승인 시험기준
  2.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여부
  3.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⑥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고시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8(형식승인의 면제) ① 법 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 인증 증명서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적합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면제번호
  3. 형식승인 면제 연월일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별표 10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6조의9(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명령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0(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인 등기부등본
3. 형식승인 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교정 관



## 리계획서

5.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통해 갖춘 경우, 그 계약서 사본

제6조의11(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절차) ① 기상청장은 제6조의10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6조의10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3. 형식승인 시험 품목 및 업무 수행범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12(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변경) ①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6조의10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1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4(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증인의 표시)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7조제1항 중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측기의 현장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검정요원의

현장접근 및 안전조치 등 협조방안을 마련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검정요원의 현장접근 및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상측기의 검정방법 등) ①검정대행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의 기상측기 검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상측기에 대하여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증명서(영문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2대 이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

③ 이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폐쇄 예정인 경우로 관련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6개월 동

안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이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7조제1호”를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사본 그”를 “사본 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

4.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정설비의 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3. 검정 기상측기 및 업무 수행범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수료 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형식승인 및 검정 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5,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 적용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시행 전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향후 관측장비를 교체할 때 해당 기상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관측장소의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및 위치	<p>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고,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p> <p>나. 기상측기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p> <p>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어야 한다.</p> <p>라. 관측장소의 면적은 35m<sup>2</sup> 이상이어야 한다.</p> <p>마.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옥상에 온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복사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p>사.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2. 적용제외	<p>도시기상 및 대기오염 감시, 시설관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관측시설은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별표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2호관련)

각 관측시설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관측목적별 관측시설	필수설치 기상측기	비고
일반기상관측소	온도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강수량계	그 외 필요에 따라 기상측기 추가 설치 가능
특수기상관측소	해당 관측목적에 필요한 기상측기를 선택하여 설치	

비고

1. 관측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기상관측소: 기상예보, 기후변화 감시, 기후통계, 국지적인 기상관측 및 기상재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관측소
- 나. 특수기상관측소: 일반기상관측소가 아닌 도시기상 및 대기오염 감시, 시설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해 기상관측을 실시하는 관측소



[별표 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측기의 종류		구분	검정 유형	검정기준
온도계	유리체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公差)의 범위 · 5점(최저점, 중간점, 0℃, 중간점, 최고점) 각 1회 검정
	유리체가 아닌 것	금속제	실내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박막형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3점(-10℃, 0℃, 2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기압계	액주형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7점(800hPa, 850hPa, 900hPa, 950hPa, 980hPa, 1,010hPa, 1,040hPa) 각 1회 검정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현장 기압 3회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습도계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3점(30%R.H., 60%R.H., 90%R.H.) 각 1회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현장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현장 습도 3회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풍향계	기계식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16방위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현장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8방위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초음파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16방위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현장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차의 범위</li> <li>· 현장 풍향 3회 검정</li> </ul> </li> <li>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풍속계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li>10점(기동, 3m/s, 5m/s, 10m/s, 20m/s, 30m/s, 40m/s, 50m/s, 60m/s, 70m/s) 각 1회 검정</li> </ul> </li> <li>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현장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li>현장 풍속 3회 검정</li> </ul> </li> <li>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ul> </li> <li>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전자식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li>직달일사 120W/m<sup>2</sup> 검정</li> </ul> </li> <li>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일사계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li>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li> </ul> </li> </ol>
		현장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상태, 재질 등</li> </ul> </li> </ol>
강수량 계	히터 부착형	실내 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차의 범위</li> <li>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li> <li>히터의 접점(4℃±2℃)과 분점(15℃± 2℃) 상태</li> </ul> </li> </ol>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원통형 이 아닌 것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1점(20mm/h)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증발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현장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적설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5점(5cm, 20cm, 60cm, 100cm, 150cm)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60cm에서 150cm 사이의 3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비고

1.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 기본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7]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가. 검정필증

◀ ————— 60mm ————— ▶		
<b>검 정 필 증</b>		▲ 40mm ▼
검 정 번 호	제 호	
기 상 측 기 명		
제 조 번 호(일련번호)	호	
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년 월 일	
검 정 기 관 명		
◀ ————— 30mm ————— ▶		◀ ————— 30mm ————— ▶

2.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

가. 검정면제필증

◀ ————— 60mm ————— ▶		
<b>검 정 면 제 필 증</b>		▲ 40mm ▼
검 정 번 호	제 호	
기 상 측 기 명		
제 조 번 호(일련번호)	호	
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년 월 일	
검 정 기 관 명		
◀ ————— 30mm ————— ▶		◀ ————— 30mm ————— ▶

- 비고 : 1. 필증의 재질은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하며, 크기는 가로 60 mm × 세로 40 mm로 한다. 다만, 소형 기상측기의 검정필증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필증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기존의 필증을 제거한 후에 부착한다.

[별표 8]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3 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	-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의3 제1항제2호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형식승인 취소

<p>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p>	<p>법 제12조의3 제1항제3호</p>	<p>시정명령</p>	<p>효력정지 2개월</p>	<p>형식승인 취소</p>
<p>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p>	<p>법 제12조의3 제1항제4호</p>	<p>형식승인 취소</p>	<p>-</p>	<p>-</p>



[별표 9]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의1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5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5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5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5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의5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10]

형식승인 증인 등의 표시 방법(제6조의14 관련)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증인

◀ ————— 60mm ————— ▶		
<b>형 식 승 인 표</b>		▲ 40mm ▼
제 작 회 사		
기 기 고 유 번 호		
기 상 측 기 명 ( 형 식 )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년    월    일	
변 경 승 인 번 호		
변 경 승 인 일	년    월    일	
◀ ————— 30mm ————— ▶	◀ ————— 30mm ————— ▶	

2. 형식승인 면제 증인

◀ ————— 60mm ————— ▶		
<b>형 식 승 인 면 제 확 인 표</b>		▲ 40mm ▼
제 작 회 사		
기 기 고 유 번 호		
기 상 측 기 명 ( 형 식 )		
형 식 승 인 면 제 번 호		
면 제 승 인 일	년    월    일	
◀ ————— 30mm ————— ▶	◀ ————— 30mm ————— ▶	

※ 1) 증인의 재질은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하며,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증인은 제품에 각인 또는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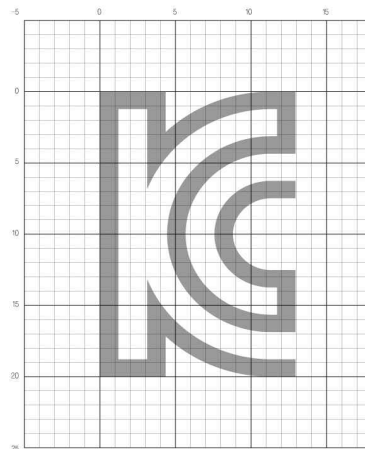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 1) 도안 요령

1-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1-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2) 색채

2-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2-2)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

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다. 표시방법

- 1)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1]

현장검정 시 안전조치 등 협조 방법(제7조제3항 관련)

1.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현장검정용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
  - 가. 현장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검정대상 기상측기를 현장검정용 차량까지 운반한다.
    - 2) 산악 등 등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난에 대비해 검정대상 기상측기의 위치 및 현장 지리에 밝은 동행인원을 지원한다.
  - 나. 겨울철 현장검정 신청 시, 진입로 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해안절벽 또는 송전철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장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검정대상 기상측기를 안전한 장소까지 운반한다.
  - 2) 추락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의 기상측기는 검정 요원의 안전을 위해 고소 작업차량을 지원한다.
3.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해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장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정대상 기상측기를 현장검정용 차량 접근이 가능한 육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실내검정 신청		기상측기명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
현장 검정 신청	표준지점번호 (지점명)	기상측기명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
	(설치 주소)						
	(특수성) 차량접근 가능(○ / X), 해양( ), 절벽( ), 송전철탄( ), 기타( )						
	(설치 주소)						
	(특수성) 차량접근 가능(○ / X), 해양( ), 절벽( ), 송전철탄( ), 기타( )						
검정증명서 신청		<input type="checkbox"/>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비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기상측기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span>제 호</span> </div>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기상측기검정증명서</h2>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검정내용	기상측기명						
	검정요소	제작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형식승인연월일	제조번호	비고 (설치장소)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p>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span>검정대행기관의 장(            )</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20px; text-align: center; color: orange;">직인</div> </div>							
<p>※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p>							



Certificate No							
<b>Qualification Certificate of Meteorological Instrument</b>							
Applicant	Name of Organization			Company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Name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Test Content	Name of Meteorological Instrument						
	Test Element	Company	Standard (Model)	Manufacturing Date	Type Approval Date	Manufacturing No.	Remarks (Installation Location)
※ Attachment: Meteorological Instrument Test Report							
<p>This Certificate certifies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passed the test as a result of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7-2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p>							
						mm/dd/yyyy	
Head of Certification Agency (                    )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Seal</div>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__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 형식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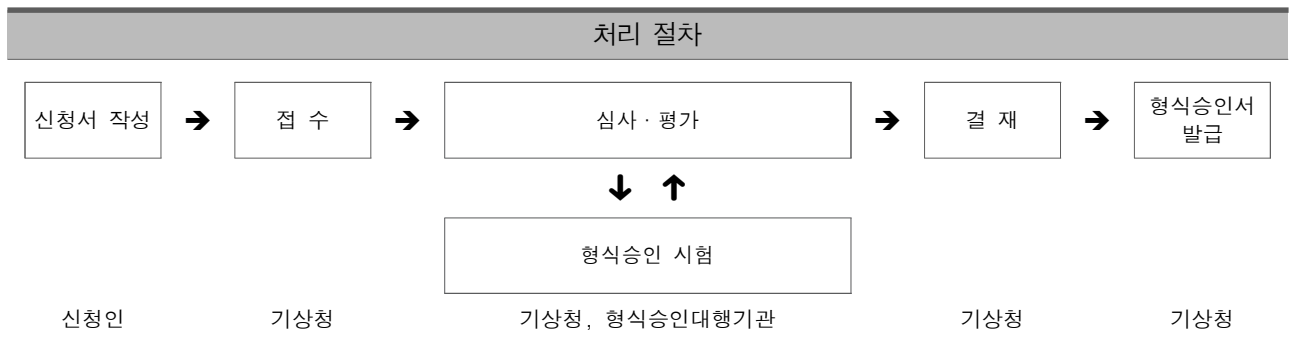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형식승인 시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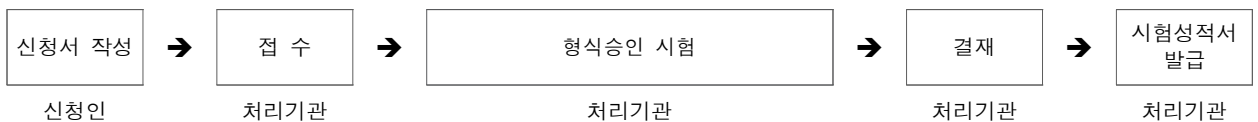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측기 견본품 3대</li> <li>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기상측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li> <li>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4.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li> <li>5.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도 또는 회로도 등의 서류</li> <li>6. 해당 기상측기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li> </ol>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 납부
-------	--	------------------------------

### 처리 절차



처리기관: 형식승인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시험 내용	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 고	
	※ 붙임 : 기상측기 형식승인 시험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 결과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

직인

## 형식승인서

구분	신규 [ ] 변경 [ ] 재발급 [ ]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승인 내용	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형식승인 관리대장

구분 (신규/변경/재발급/면제)	연 월 일	형식승인(면제)번호	기상측기명	형식	제작사	규격(모델)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형식승인 재발급 신청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재발급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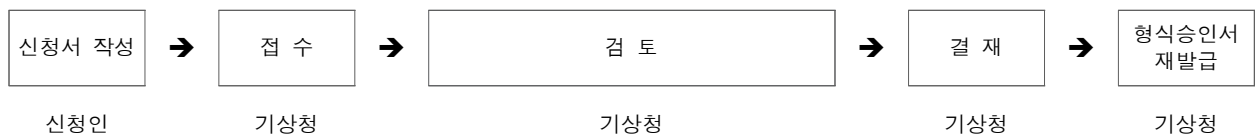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처리 절차



## 형식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변경승인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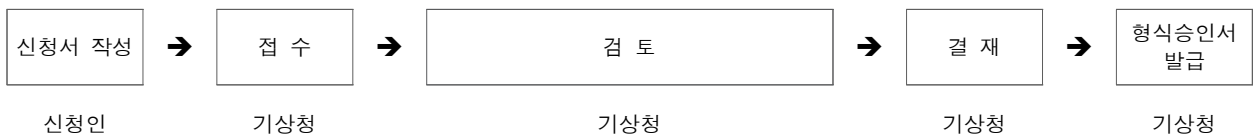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형식승인서 2. 구조·재질·색상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대비표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형식승인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제작사		
	명칭	형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규격(모델)		
	한국산업표준 (KS)	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날짜		년 월 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1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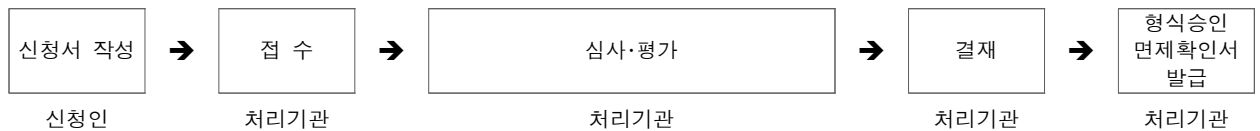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 인증 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절차



처리기관: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형식승인 면제확인서

형식승인 면제번호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승인 내용	기상측기명	
	형 식	
	제 작 사	
	규격(모델)	
	비고	
	한국산업표준 (KS)	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날짜	년    월    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2항에 따라 위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형식승인 시험품목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인 등기부등본 3. 형식승인 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교정 관리계획서 5.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통해 갖춘 경우, 그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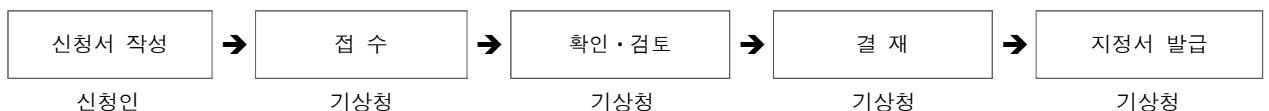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제 호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의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형식승인 시험품목
7.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1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형식승인 시험품목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12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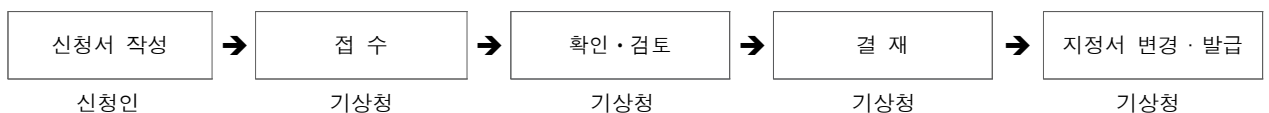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상관측기준)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u>기상요소별</u>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2. 3.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u>통신체제</u>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p> <p>② (생략)</p> <p>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p>	<p>제2조(기상관측기준) ① ----- ----- ----- -----.</p> <p>1. ----- <u>관측장소의</u>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통신체</u> <u>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 -----</p>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 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

7.·8. (생략)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 시설을 교체(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교체 목적

2. 관측시설 교체 내용

3. 관측시설 교체 일정

③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 시설을 이전(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송수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지 -----  
-----

7.·8. (현행과 같음)

② -----  
-----  
-----  
-----  
-----하거나 이  
-----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  
----- 내용 중 변동사  
-----항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이전 목적
2. 관측시설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 이전 일정

④ (생략)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

②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  
-----  
-----.

제6조의3(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실



시하는 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 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 견본품 3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기상측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

5.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계도 또는 회로도 등의 서류

6. 해당 기상측기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기상측기 견본품을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해할 수 있다.

④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받으려는 기상측기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신 설>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4(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한 기상측기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기상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대행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신 설>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를 분  
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  
발급 신청을 받으면 기상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  
다.

제6조의6(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  
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  
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재질·색상 등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  
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의3제2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구조·재질·색상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 대비표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7(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기상측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장 및 기상측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형식승인 시험기준

2.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여부

<신 설>

3.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고시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8(형식승인의 면제) ① 법 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 인증 증명서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적합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



<신 설>

<신 설>

호서식의 형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면제번호

3. 형식승인 면제 연월일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별표 10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6조의9(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명령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0(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

호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인 등기부등본
3. 형식승인 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신 설>

교정 관리계획서

5.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통해 갖춘 경우, 그 계약서 사본

제6조의11(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절차)

① 기상청장은 제6조의10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6조의10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신 설>

2.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3. 형식승인 시험 품목 및 업무  
수행범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  
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12(형식승인대행기관 지

정 변경) ① 법 제12조의4제3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제6조의10제1  
호, 제2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  
식승인대행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  
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  
식승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  
리하고, 형식승인 업무에 지장  
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 설>

<신 설>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

형식승인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1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4(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증인의 표시)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  
 -----  
 -----  
 ----- 기상측기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 지정 받  
 -----

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상측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만료일 3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한다)-----  
-----  
-----  
-----.

②-----  
-----  
-----  
----- 10일 -----  
-----  
-----  
-----  
-----.

③ 기상측기의 현장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검정요원의 현장접근 및 안전조치 등 협조방안을 마련하여 검정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검정요원의 현장접근 및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2(기상측기의 검정방법 등) ① 검정대행기관은 제7조제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  
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  
으면 제10조의 기상측기 검정기  
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상  
측기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  
른 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증명서(영문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  
다. 단, 2대 이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

③ 이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방  
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① -----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  
내에 교체하거나 폐쇄 예정인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관측기관이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경우로 관련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이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신 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③ (생략)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7조제1항-----

3. 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  
리계획서

4.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정  
설비의 보유 또는 공동활용·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5. ----- 사본 또는 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

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검정설비의 요건) 영 제7  
조제2호 가목에 따른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의 요건은 별표 6과 같  
다.

<신 설>

음 각 호의 사항을 -----  
-----.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  
소

2.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3. 검정 기상측기 및 업무 수행  
범위

<삭 제>

제16조(수수료 등) ① 법 제22조  
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  
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형식  
승인 및 검정 대행기관에 납부  
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 또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  
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